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②, 제2. 3. 4) (2) 가. 라) ②, 제5. 19. 19-9 1), 제5. 19. 19-9 3) (5), 제5. 19. 19-9 4) (1) 및 (2), 제5. 19. 19-9 5), 제8. 4. 4.8 4.8.2 다, 제8. 6. 6.10 6.10.9 가]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나.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안 제5. 7. 7-2 5) (10) 및 제8. 6. 6.3 6.3.2 6.3.2.3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 · 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 · 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안 제8. 8.)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 신설
   -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 · 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현행 112개*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288호(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종)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 검체 →시료, 개미산 → 포름산, 칼럼 → 컬럼, 잔사 → 잔류물 등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464호(2021. 9. 30. ~ 2021. 11. 30.)
2) 식품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12. 24. ~ 12. 28.(서면)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12. 20 ~ 12. 24.(서면)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 · 규격분과 심의: 2022. 1. 17 ~ 1.19.(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4558호(2021. 9. 2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 1. 6 ~ 1.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 (2022. 1. 10 ~ 1. 19)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822회, 2022.2.11.)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8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7809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4호, 2021.12.30.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를 교육대상자로 추가(안 제1호가목)

나.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안 제2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2. 16.)

(2) 행정예고(2022. 2. 22. ~ 2022. 3. 14.)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2조제5의2호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감염병 등이 발생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인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시 감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활성화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안 제5조제6항, 제6조제3항 및 별표 4)

1) 식품 소비 환경변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식품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은 부재한 실정

2) 식품운반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식품운반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로 온라인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활성화에 기여

나. 공유주방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안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및 별표 4)

1)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마련 요구

2)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식품제조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제조업 등 기존 영업자와의 형평성 부여

다.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1) 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증 및 연장 평가 시 현장 조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비대면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

라.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 · 평가 감점 근거 마련(안 별표 4)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0]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의2]에 따라 해당 법령 위반으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규정이 부재한 실정

2)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 · 평가 시 선행요건관리 평가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법령 준수율 제고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4. 5.)

(2) 행정예고(2022. 4. 7. ~ 2022. 4. 28.)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4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1) 멥틸디노캅,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3) 아세페이트, (85) 에토펜프록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2) 이산화황,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49) 트리플루미졸, (152) 티오벤카브, (157) 퍼메트린,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201) 헥시티아족스, (209) 테플루벤주론, (212) 플루페녹수론,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37) 티아메톡삼,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5) 스피로디클로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6) 트리플루뮤론, (380) 피리달릴,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31) 아이소피라잠,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69) 플루트리아폴, (473) 피라지플루미드, (505) 메타자클로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3) 아사이노나피르, (520) 플로릴피콕사미드, (521) 이프플루페노퀸, (522)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6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3 7.1.3.106-109]

1)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20호(2022. 3. 2. ~ 2022. 5. 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2. 5. 10.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823호(2022. 2. 28.)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